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61
----------	---------

제안일자 : 2016. 12. 20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일반건축물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수정 주요내용

-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에 개방된 면적의 1/2이상에 여단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에 개방된 면적의 1/2이상에 여단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시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15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

-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일반건축물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어 「건축법 시행령」은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 “(개방된 면적의 1/2이상에 여단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추가하고,
-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개방된 면적의 1/2이상에 여단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며, 건의안 이송부서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발령처인 국민안전처를 추가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

「건축법 시행령」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서는 ‘갓 복도식 공동주택’에서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부분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을 염려하여 1)특별 계단설치 2)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새시가 설치되지 못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에서는 여름에는 복도에 비가 들이쳐서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 등으로 인하여 수도가 동파되고 복도에 얼음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실을 감안하면, 복도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를 건축물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보아 안전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리모델링에 가까운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부분에 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도가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사다리가 진입하고 또 외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난계단이나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를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개방된 면적의 1/2이상에 여단을 수 있는 창호가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하고, 2)「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에서도 같은 정의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한다.

2016. 12. 20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

개정 전	개정 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p>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④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06.6.29.></p>	<p>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④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개방된 면적의 1/2이상에 여단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06.6.29.></p>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p>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트·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2011.11.24.></p>	<p>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트·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갓복도식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을 포함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2011.11.24)></p>